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

1307

2020년 6월 18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

## 1. 제안경위

○ 2020. 2. 1. 장상기 의원 발의 (2020. 2. 12. 회부)

### 2. 제안이유

- 자연경관지구는 산지·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나, 건폐율 및 높이, 조경면 적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제약과 주거환경이 악화되 는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구 해제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 임. 이에 따라 건폐율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시 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.
- 서울시는 현재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은 3층 12m, 건폐율 30% 이하의 건축물만을 허용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과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.

## 3. 주요내용

○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2항 본문 중 "30퍼센트"를 "40퍼센트"로 단서 조항 중 "40퍼센트"를 "50퍼센트"로 개정한다.(안 제39조제2항)

## 4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으로, 주요 내용은 자연경관지구 기본 건폐율 30%를 40%로 완화하고, 너비 2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40% 이하로 완화해주는 사항을(이하, 건축규제완화구역) 50% 이하로 완화폭을 확대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	제39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
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	2
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	
은 <u>30퍼센트</u>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	<u>40퍼센트</u>
다.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	
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	
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<u>40퍼센트</u> 이	<u>50퍼센트</u>
하로 할 수 있다.	
1.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	1. (현행과 같음)
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	
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	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	2. (현행과 같음)
제3호에 따른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	
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	
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	
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	

- 자연경관지구의 높이(3층·12m 이하)·건폐율(30% 이하) 규제가 용도지역 용적률 확보도 어렵게 하여1)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량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에서,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건축행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- 다만, 완화 수준은 자연경관지구 취지·특성 보전과 기반시설 부담 범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고, 민간 건축행위 활성화를 위한 용도 지역 용적률 실현을 위해서는 건폐율과 높이가 종합적으로 고려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이 개정조례안대로 자연경관지구의 기본 건폐율을 40%로 완화할 경우, 단독(중·대규모 토지) 또는 합필을 통해 기존의 단독주택이 다가구·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어 자연경관지구의 단독주택이 밀집된 특성이 훼손될 수 있고, 주차장·도로 등이 확충되지 않은 채밀도만 증가되는 우려가 있어, 기본 건폐율 완화 대상 토지는 일정 규모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- 또한, 건축규제완화구역은 이 조례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2) 따

<sup>1)</sup> 자연경관지구 약 80%를 차지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용적률이 150% 이하이나,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(건폐율 30%, 층수 3층)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은 90% 수준임

<sup>2)</sup> 제39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④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.

<sup>1.</sup> 인접지역과 높이차이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회를 이룰 수 있는 지역

<sup>2.</sup>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

<sup>3.「</sup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

라 건폐율 40%, 층수 4층(16m)으로 완화할 수 있어 용도지역 용적률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<sup>3)</sup>, 이 개정조례안의 건축규제완화구역 건폐율 50% 완화는 자연경관지구 개방감 확보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○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관련하여 이 개정조례안 외에도 2건 이 상정되어 있으므로<sup>4)</sup>, 이 개정조례안들의 병합심사를 통해 자 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규정이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되 어야 할 것임.

담 당 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	
연 락 처	02-2180-8206	
이 메일	rienrien@seoul.go.kr	

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

<sup>3)</sup> 건축규제완화구역 지정시 건폐율 및 높이 완화를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50% 실현 가능 (40% \* 4층)

<sup>4)</sup> 의안번호 404(장상기의원 발의,, 자연경관지구 층수 완화), 의안번호 1559(고병국의원 발의, 자연경관지구 건 폐율 및 높이 완화)